팔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 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팔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우리 유치원은 팔덕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하 우리 유치원)이라 칭한다. 제3조 (위치) 우리 유치원은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로 328에 위치한다.

제2장 교육연한·학기 및 휴업일

- **제4조 (수업연한)** 우리 유치원의 교육 연한은 1년~3년으로 한다. 단, 취학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 제5조 (학기) 우리 유치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1학기는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하고, 2학기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 제6조 (휴업일) 우리 유치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① 관공서의 공휴일 및 국가가 정한 임시공휴일
 - ②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 ③ 유치원장이 정하는 재량휴업일
 - ④ 개교기념일: 5월 12일
 - ⑤ 기타 휴업일: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제3장 학급편제 및 원아 정원

- 제7조 (학급편제) 우리 유치원은 관할청의 배정 학급에 근거하여 편성한다.
- 제8조 (원아정원) 우리 유치원의 유아 정원은 전라북도교육청 학급당 유아수용지표에 근거한다.

제4장 교육내용 및 수업일수·수업 운영 방법

제9조 (교육내용) 우리 유치원의 교육내용은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 유치원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순창교육지원청 유아교육 운영계획을 근거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내용을 선정하여 유치원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교육한다.

제10조 (수업일수 등)

- ① 우리 유치원의 수업일수는 년18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원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 에 따른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가. 천재지변의 발생, 연구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제2호 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수업일수의 10분의 1
 - 나. 법 제31조 제1항 제3항에 따른 휴업명령이나 휴원처분에 따라 휴원하는 경 우: 해당 휴업 기간 또는 휴원 기간
 - 다. 감염병 등 비상상황 발생 시 관할청의 지침에 따른다.
- ② 우리 유치원의 출석인정은 「유아학비 지원계획」과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다.
- ③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으며, 우리 유치원의 교외체험학습은 최대 30일까지 수업일수로 인정한다.
 - 가. 원장의 허가를 받아 유치원을 대표한 경기·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교환학습,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나.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을 실시한 경우

제11조 (수업운영 방법)

- ① 우리 유치원은 다음 각 호의 수업운영을 한다.
 - 가. 교육과정 : 1일 4~5시간 이내의 유아·놀이중심 교육과정 운영
 - 나. 방과후 과정: 교육과정 이후의 시간에 운영하며, 해당연도 관할청 방과후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기본적인 교육활동 및 돌봄활동으로 운영하다.
- ② 원장은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업 운영방법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장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생활지도

제12조 (생활지도의 범위) 원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유아를 지도할 수 있다.

- ①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② 유치원의 학급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 ③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행위
- ④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⑤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⑥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 ⑦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 ⑧ 유아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 ⑨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유아에 대한 인식 및 태도
- ⑩ 그 밖에 교무회의에서 정하는 사항

제13조 (분리보관 가능 물품)

① 원장과 교원은 유치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유아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분리보관 가능한 물품)

요건		보관기간	분리장소	처리방법
1 2	유아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 법령에 따라 유아에게 판매 될 수 없는 물품	활동 시간	교무실 등 담임이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보호자에게 알리고 되
3	유아 또는 교직원의 개인정보보 호법에 위배되거나 교육활동 침 해소지가 있는 물품		지정하는 장소	돌려 줌

제14조 (기타) 그 밖에 생활지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4조 제2항 및 교육부의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와 관할청의 지침에 준한다.

제6장 입학·전입·학·휴학·재학·퇴학

- 제15조 (입학자격) 우리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로 한다.
- 제16조 (입학시기) 원아의 입학은 원장이 허가하되, 결원이 발생할 경우나 정원의 수가 미달할 경우에는 입학할 수 있다.
- 제17조 (전입학) 유아가 주소의 이전 등으로 전입 및 전출 하고자 할 때 유치원장은 전입·학을 허가 한다. 단, 전입의 경우 정원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 제18조 (재입학) 3, 4세에 입학하여 재학 중인 유아의 경우는 재입학을 허가한다.
- 제19조 (휴학) 우리 유치원에서 재학하던 중 질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유아는 학년말 까지 휴학할 수 있다.
- **제20조 (퇴학명령)** 질병 및 기타 사유로 타 유아의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퇴학을 명할 수 있다.

제7장 수료 및 졸업

제21조(졸업) 원장은 5세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아 중 초등학교 취학대상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2조(수료)

- ① 5세 유아 중 교육일수 3분의 2 미만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 ② 교육과정을 이수한 3, 4세 유아와 취학유예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한다.

제8장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 제23조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우리 유치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각종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① 납입금, 입학금 및 기타의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와 협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② 징수방법 및 절차 등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9장 규칙 개정

제24조 (규칙 개정) 우리 유치원의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우리 유치원 교직원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하고 학교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한다.

제25조 (시행 규칙)

- ①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 ② 이 규칙에 없는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 동법시행령, 기타 지침 및 제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부 칙

- 1. 이 규칙은 201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 2. 이 규칙은 2020년 10월 2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3. 이 규칙은 2021년 2월 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4. 이 규칙은 2023년 11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